



법과대학 수업 방법의 개선 방안

이장희 |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I. 문제 제기

지난 7월 24일 법무부는 사법 시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현행 사법 시험 제도가 법학 전반에 걸친 폭넓은 공부 없이 시험 과목의 예상 문제에 대한 암기식 공부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1회의 시험 성적만으로는 오늘날 법조인에게 무엇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법조 윤리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과 법적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 시험 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법학 교육과 연계함으로써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와 국가 인력 지원의 효율적 배분 효과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입법 예고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험의 응시 자격으로 법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또는 35학점 이상의 법학 과목 학점 취득을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다만 이러한 응시 자격 제도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사법 시험 제도는 법과대학 수업 방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주입식과 암기 위주의 현행 법과대학 수업 방법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주입식과 암기 위주의 수업 방법이 법적 마인

드와 철학과 법조 윤리를 지닌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법학 수업 방법의 문제점은 그 동안 법과대학 교육 개선안과 사법 시험 개선안에서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왜 개선되지 않았는가? 그 주요인은 현행 사법 시험 제도와 법과대학 교육 목적이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현행 제한된 인원을 선발하고, 논문식 출제 방법, 시험 과목의 문제점, 시험 방법의 문제점을 유지하는 사법 시험 제도하에서는 각 대학 법학대학은 사법 시험에 더 많이 합격하기 위해서 현재 주입식 교육과 암기식 교육을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선호하고 또 그것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법과대학 교육의 목적도 현실적으로 사법 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데 큰 주안점을 두고, 실제로 사시 합격자 수가 그 법과대학의 우열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각 대학 법과대학은 지금 경쟁적으로 사시 준비생을 위해 많은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양성돼 합격된 법조인들은 암기 잘 하는 선수는 길러 낼 수 있어도 국민과 국가가 원하는 정직하고 유능한 법조인은 처음부터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학 수업 방법의 개선은 현행 사법 시험 제도와 법학 교육 목적이 개선 된다는 전제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Ⅱ. 현행 법학 수업 방법의 문제점

지금 한국의 법학 교육은 주로 이론과 개념 위주의 일방적 강의를 통한 것이었다. 그래서 법학 교육이 추상적 법학 이론에 치우친 연역적 방법으로서 교수 독자의 주입식 강의 방법으로 일관되어 왔다. 그리고 질문이나 토론의 기회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법원 현장 견학이나 사례 발표나 현실 문제 해결 적용 능력의 기회가 전혀 없다. 오로지 교수의 일방적 강의, 교과서 그리고 질관과 백묵으로 추상적인 법 이론을 단편적으로 암기 방법을 잘 훈련 시켜 주려고만 한다. 오로지 현행 사법 시험의 제 2차 주관식 논문 시험과 제 1차 객관식 선택형에 무난히 합격하는 최선의 기술과 방법을 잘 훈련시키는 교수라야 학생들로부터 인기와 관심을 갖는다. 다시 말해 수험생들은 교수가 학자이기보다는 학원 선생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법과대학 교수가 되면 우수한 학술 논문을 쓰는 것보다는 수험용 교과서를 쓰려고 한다. 그 결과 창의적 연구 의욕을 가진 초임 교수들조차 자기 분야의 우수한 학문적 심층 연구보다는 기존 법학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수험생의 구미와 시험 합격에 맞게 재편집하는 수험용 법학서를 내는데 신경을 쓴다. 그것이 짧은 시간 내에 경제적 수입이나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법 시험 과목이 아닌 과목은 학생들은 필수가 아니면 처음부터 듣지 않기 때문에 폐강되기 일쑤다. 그래서 법철학, 로마법, 법사상사, 비교법 그리고 법사회학과 같은 기초 법학 과목이 교과 과정에서 소외되고 전임 교수 조차 없는 대학이 많다. 또 교수가 사법 시험과 직접 관계없는 법조인의 자세와 윤리, 법의 정신을 강의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시험 합격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허망한 메아리로 들린다. 학생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최고의 절박한 과제이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법과대학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신림동에 있는 고시 학원에 가든지 절간에 혼자 박혀 수년 동안 학설상 아무런 이론이 없는 통설에 해당하는 법 원칙만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알고 있다. 수험생들은 현재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에 무엇이 문제이고, 법조인의 윤리나 사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시험 합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오히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시험 합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법과대학 강의실은 텅텅 빈다. 법과대학 학생들 중에는 휴학을 하는 학생이 많다. 우리는 우수한 법과대학 입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적성에 맞지 않는 이러한 암기식 수험 공부에 적응하느라고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완전히 소모하면서도 시험에 합격 못하고 평생을 불행하게 보내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보아 왔다. 이것은 바로 이 나라의 잘못된 사법 시험 제도와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법과대학 교육 방법이 빚어낸 회생자들이다. 또 이것은 국가 인재의 큰 낭비이다. 왜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관계 당국이 몰랐는가? 모두 알고 있지만 이해를 가진 법조인들이 그들의 기득권 방어에 급급한 나머지 전혀 개혁에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설사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책 속의 법과 실제의 법 사이에 괴리가 생겨 학생들이 강단에서 배운 법학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없는 점에 대하여 비판이 가해져 왔다. 말하자면 강단 법학과 실무 법학 사이에 심각한 괴리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법학 교육 4년을 받은 사람이 매매 계약서나 소장하나 제대로 못쓰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법률 문제 하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법학 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의학에 비교한다면 기초만 있고 임상이 없다는 것과 비교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의 법학 교육의 목표와도 직

접 연관되어 있다. 즉, 우리 법학 교육의 목표가 유럽이나 영미에 있어서처럼 합격자의 수가 90% 이상인 것을 상정하여 전적으로 전문적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느냐, 혹은 사법 시험 합격자를 전혀 무시하고 법적 소양을 지닌 교양인을 육성하는데 목표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양자의 복합이나 등 목표가 선명하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법과대학 교육 목표가 혼들리는 것은 사법 시험 합격자 수가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재학생 합격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몇몇 소수의 합격자 때문에 법과대학 교육을 순수하게 법조인 양성에만 맡겨 둘 수도 없으니, 법과대학 교육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학 교육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특히 사법 시험 출제 방식과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 현행 사시령은 출제와 체점이 특수한 학설에 편파되지 않고 일반적인 학리 해득에만 중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통한 새로운 학문의 경향을 습득하지 않아도 되며, 골방에서 주입식, 암기식으로 수험 준비를 하는 폐단을 낳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과대학 수업 방법도 자연히 주입식 방법으로 흘러간다. 이것은 법학 교육이 예비 법률인들에게 legal mind도 심어 주지 못하고, 법 기술자만 만들어 내며, 나아가 법 운용의 경직성까지 갖고 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사법 시험의 제 2차(논문식)마저 (...을 설명하라) 또는 (...을 논하라) 하는 식의 서술 방식의 문제가 거의 통일적으로 채택되어 왔다. 출제시 출제 당국도 학설상 이론이 없는 문제를 출제할 것을 요망한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원론적인 문제가 나오고, 수십 년 전에 나온 문제를 포장만 달리해서 계속 출제하기 일쑤다. 또 제 1차 사법 시험도 4지 선다형이어서 선택 과목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자기 취미와 상관없이 무슨 과목이 수험 부담이 적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 수험생이 물린다.

그러다 보니 전공 선택 과목 학회는 가급적 쉽게 그리고 출제 범위를 줄여서 자기 과목을 백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또 사법 시험 제 3차 시험은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 학생들은 제 2차 시험 성적만 우수하게 합격하면 제 3차 시험은 통과 의례로 여긴다. 제 3차 시험도 과거 서독처럼 독자성을 갖는 시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여 수험생의 전반적인 법적 지식을 물어보는 단답형 케이스 해결의 구두 시험으로 전환시켜 당락에 영향을 주도록 좀더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법학 교육의 패행은 사법 시험 선발 인원 수와도 직접 관련된다. 물론 그 동안 사법 시험 선발 인원이 대폭 증가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응시자 대 선발 인원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교하거나 인구수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러한 제한된 선발 인원은 법학 교육의 목적을 혼란에 빠뜨린다. 즉, 법학 교육이 민주 시민의 교양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직업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를 갖고 온다. 그리고 적은 선발 인원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적은 선발 인원은 변호사의 수임료를 높이고 이것은 결국 가진 자만이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사법부, 정부 나아가 법치주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III. 법학 수업 방식의 대안으로서의 Case Method와 Problem Method

여기에서는 법학 교육 방식의 개선의 일환으로 미국의 법학 교육 방식의 일환이 Case Method와 Problem Method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1. 판례 교수법(Case Method)

판례 교수법은 뉴욕의 변호사로 있다가 그 후 하버드 법과대학의 교수가 된 크리스토퍼(Christopher

Choumbus Langdell 1826~1906) 교수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18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법조인의 양성은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제식 교육(apprenticeship)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식 방법(lecture method)과 교과서 방식(text book method)이 병행되었다. 미국에서 법학 교육의 변화는 1870년 랑델 교수의 판례 교수법이 제창될 때까지 도제식 교육 - 강의식 교육 - 교과서 교육의 도식으로 변화를 볼 수 있다.

랑델 교수에 의하여 비롯된 판례 교수법은 초창기에 많은 저항이 있었고, 그것이 정착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원래 랑델 교수가 판례 교수법을 주장하게 된 동기는 19세기 자연 과학의 발달에 영향받아 법학도 단순한 기술(skill)이 아니면 과학(science)이어야 하고 그의 실험실은 도서관이며 기본 원칙을 판례로부터 도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랑델 교수는 법의 과학성을 강조함으로써 종래의 법학 교육에 일대 혁신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시작된 판례 교수법은 랑델 교수의 제자이며 판례 교수법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하버드 법대의 에임스(Ames) 교수와 콜럼비아 법대의 키너(Keener) 교수에 의하여 이론적 뒷받침을 받으며 발전되었고, 1920년대에 이르러 미국 전 법과대학의 일반화된 교육 방법으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법학 교육의 목적은 처음부터 전문적 직업 법조인의 양성에 있었으며, 교육 내용도 판례에 대한 분석 능력, 종합 능력과 법 원리의 실질적 지식을 교육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장래의 법률가로서의 법적 사고 능력(legal mind)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 교수법은 법의 의미와 법 원리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선된 상소 법원의 판례를 대상으로 그 판례 속의 사실(relevant facts), 쟝점(the issue presented), 판례 이유(court's reasons)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석하는 힘을 길

러 학생으로 하여금 법 이론과 실제 문제간의 관계를 명료하게 이해하게 하는 방법이다. 강의 방식은 교수와 학생간에 질의 응답을 통한 이른바 소크라틱(Socratic) 방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 교수법은 특히 2차 대전 이후 법학 교육의 만병 통치약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문제 중심 교수법(problem method) 등으로 보완되었다. 대체로 지적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되는 시간에 비하여 얻어지는 지식의 양이 적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교실에서 90분에 걸친 토론을 통해 얻는 지식보다 그 시간에 교과서를 읽음으로써 보다 많은 법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 교수법 지지자들은 실제 사건에 연결되지 않은 법 원리의 이해는 진정한 법 원리의 이해가 될 수 없다고 하며 학생들도 교과서의 무미건조한 암기보다 실제 사건에서 보다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 둘째, 판례가 갖는 경직성, 협소성 때문에 사건을 전체로서 종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좁다고 한다. 현대의 법률 분쟁은 당해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 등을 포괄적 각도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인접 과학 예컨대 인문 과학, 사회 과학과 관련하여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work)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지 못한다. 넷째, 예방 의학적인 훈련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판례의 경직성, 협소성 때문에 사건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에 얘기 할 problem method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다. 다섯째, 실무가에게 필요로 하는 실제적 기술을 충분히 교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인정의 훈련이 잘 안 되고 너무 이론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버드 대학에서는 증거법 시간에 실무기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수와 공동으로 Trial Practice를 하기도 한다. 여섯째, 입법(legislation)의 연구에 부적

합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제정법의 해석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상소 법원(appeal court)의 판례만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실제로의 사무실과 사실상 법원(Trial court)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과대학에서 배운 판례 교수법이 큰 도움이 못된다는 것이다. 여덟째, 지엽적인 것이지만, 학급 크기(class size)가 문제되고 있다. 학급 크기에는 작게는 50여 명, 크게는 1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판례 교수법은 큰 법대의 학급에서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판례 교수법은 첫째, 학생의 법적 사고 형성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고 둘째, 법을 단순한 이론으로 파악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실제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 학생의 자주적인 면학의욕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판례 교수법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도 판례 교수법은 학생을 위한 최선의 교육방법으로 보고 있다.

2. 문제 교수법(Problem Method)

문제 교수법이란 간단히 말해서 판례 교수법이 [법이란 무엇인가?] 또는 [그 법의 내용이 타당한가?]에 대한 훈련임에 반해, 문제 교수법은 위의 내용에 대한 훈련이 된 것을 전제로 [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 판례 교수법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나온 것이다. 문제 교수법은 미국의 법과대학에서 1학년을 마치고 2, 3학년 수업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1학년 과정에서 법의 일반 원리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종합적 방법인 문제 교수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과대학에서 1학년 과정의 수업이 어느 학년의 수업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성적이 좋아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의 평가는 절대적으로 성적에 의해 좌우되고, 성적은 학생의 신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Law Review의 편집인이 되는 것, 여름 방학 동안에 직업을 얻는 것(summer employment) 및 연구 조교(research assistant positions)가 되는 것 등은 모두 성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문제 교수법은 2종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교실에서의 문제 교수법(class problem method)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상의 문제 교수법(research problem method)이다. 전자가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교실에서 문제 교수법이란 무엇인가? 첫째, 교수가 미리 문제를 작성하여 교실에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공한다. 문제 작성에서 어려움은 문제의 내용에 있다. 왜냐하면 문제 교수법의 중요 목적이 학생들에게 법률가의 사고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문제가 완벽하고 실제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자료가 제공된다. 해당 법률 자료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를테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자료가 제공되어 학제간 연구를 할 수가 있다. 다른 한편 연구상의 문제 교수법은 대체로 학생들에게 법학 연구의 기술(technique)과 방법을 알리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주간에 걸친 paper work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변호사로서의 사고를 양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class problem과 research problem이 조화하여 학생들의 법적 사고 능력을 양성하게 되고 판례 교수법의 결함을 보완하게 된다.

문제 교수법에서 교수의 역할은 크게 질문자로서의 역할, 조정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역할로서 3가지로 구분된다.

문제 교수법의 장점으로는 첫째, 법을 보다 더 잘 이해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 교수법은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실무 변호사의 사고에 보다 더 잘 접근 할 수가 있다. 둘째, 법 기술에 대한 감각을 보다 더 증대시킨다. 셋째, 학생들의 지역 활동을 증대시킨다. 넷째, 학생들에게 법적 문제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학적, 철학적 측면에서도 보게 한다. 다섯 째, 문제 교수법은 법 제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호사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유도 할 수 있다.

IV. 한국의 법학 수업 방식의 대안

위에서 사법 시험 제도가 법학 교육에 미치는 역할이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현행 사법 시험은 응시 자격, 선발 인원, 응시 과목, 시험 과목, 시험 출제의 방식 등에서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해침으로써 법학 교육이 예비 법률인들에게 법학 교육의 목적인 legal mind를 심어 주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법 치주의의 확립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는 법과대학 수업의 정상화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행 사법 시험 제도의 역기능으로 인해 왜곡된 법과대학 수업 방식은 장래 법 기술자만 만들어 낼 뿐, 법률적 사고 능력을 가진 사회에서 존경받는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법률인을 양성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법과대학의 수업은 학문의 성격, 학습자의 배경,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인 수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적절한 수업 내용과 방법에 의해 수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유럽의 Case Method나 Problem Method를 그대로 직접 도입할 수도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방법으로 교육하거나 그 교육으로 성공한 대학도 아직 없다. 미국과 우리 나라는 법률의 체제부터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법학 교육 방법을 그대로 모방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판례 국가인 영미

에서는 Case Method나 Problem Method에 의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도 그 나라 안에서조차 그 방법론에 관한 시비가 일고 있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Law School에 받아들여 법학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법과대학에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방법론을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그 대상부터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교수가 법률 준비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준비해 올 문제를 미리 주어도 그 준비를 제대로 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이고 현실이다. 그래서 저학년에서부터 판례나 사례 중심의 토론으로 우리의 성문화되어 있는 실정법을 완전 이해시킨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저학년에는 강의식 교육에 의존하고, 고학년에 가서 연습 과목과 세미나 시간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례 중심 교육을 시키면서 미국의 방법론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각 대학의 법률 상담소 기능을 강화하여 고급 학년의 법률 상담 참여의 필수화, 의무화를 기함으로써 임상 법학의 기회를 쌓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모의 법정(Moot Court) 및 법정 견학 모니터 결과의 보고서 제출을 학점화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팀티칭(전문가 초청),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그리고 재택 강의(사이버 강의)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의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법과대학 수업 방식을 위해서는 현행 강의식 수업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완적으로 사례 중심 교육과 문제 교수 방법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도입하고, 동시에 사법 시험 출제 방법 개선 및 선발 인원의 확충 그리고 법과대학 독립 도서관의 설치, 판례 교재의 개발 등 제반 구조적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이장희, 「한국법학교육의 문제점」,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 산업화의 문제점(上)』, 나남, 「사회비평신서 12」, 1990년 7월, pp.135~174.
- 이장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사법 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편, 『사회개발연구 총서』 제 25권, 1990년 12월, pp.71~112.
- 이장희, 「한국 산업화 과정 중 법의 역할」,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사회개발연구 총서』 제 21권, 1989년 12월, pp.141~204.
- 한봉희, 「법학교육방법론의 재검토」, 충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논문집 제 12집, 1984년 12월, pp.35~49.
- 기재환, 「한국의 법학 교육과 고시 제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제 23권 1호, 1982년 3월, pp.46~9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편, 「법학 교육과 법조 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년 12월.
- 한국법학교수회 편, 「법학 교육과 법조 개혁」, 길안사, 1994년 4월.

사법 시험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법무부 공고 제 2000-30호, 2000년 7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법학 분야 평가 기준, 2000년 5월(자료 RM 제2000-6-196호)

이장희

독일 Kiel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부회장 및 이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자문, 대한 국제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외대 법과대학 교수 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 SOFA 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연구』, 『현대국제조약집』, 『한반도 비핵지대와 국제법』,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한일간의 국제법적 현안 문제』 등 다수가 있다.